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	과 장 강희정 사무관 구자욱	042-481-8321 042-481-8243
	2016년 4월 21일(목) 조건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4월 20일(수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특허청, 특허법 개정 동향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

- 부실특허 방지,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 등 2016년 개정법 대상 -
-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특허무효제도 개선 논의도 소개 -

-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특허법 개정 동향 설명회를 4월 25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최근 특허법 개정은 부실특허는 예방하되 등록된 특허권은 제대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.
 - 국내·외에서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와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,
 - 특허, 금년에는 이미 부실특허 방지*,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**를 위한 두 차례의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.
- * '16.2.29. 공포, '17.3.1. 시행 ** '16.3.29. 공포, 6.30. 시행
- 이번 설명회는 금년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변리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다.
 - 4월에는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개최하며, 5~6월 중 지방 소재 기업들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설명회는 먼저 특허취소신청제도,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등 부실 특허 예방과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소개하고,

* ① 특허취소신청제도: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까지 무효증거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하여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제도

② 특허권 이전청구제도: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 받은 경우,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해 특허권을 돌려받는 제도

○ 영업비밀 자료라 하더라도 침해 및 손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제출을 강제하는 등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,

○ 아울러, 기업의 분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특허무효제도 개선 논의도 소개될 예정이다.

□ 특허청 관계자는 “최근의 특허법 개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”면서, “특허분쟁이 늘어나면서 일반 기업들도 특허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, 이번 설명회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고 밝혔다.

붙임 : 창조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주요 내용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는 경우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구자욱 사무관(042-481-8243)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
특허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주요 내용

- (추진경과: '14.2~15.3) 전문가 위원회(16회), 한국 갤럽 설문조사(2회), 공청회(1회) 등을 거쳐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 도출
- ※ 의견수렴('14) → 설문조사·공청회('14.12) → 청안확정('15.3) → 입법예고('15.3.19~4.28) → <향후 일정>: 법제처 심사('15.5월) → 국회 제출('15.6월)

개정 배경	주요 개정 사항
▶ 1인당 심사건수 과다로 특허품질에 대한 우려 제기 ☞ 국민 참여를 통한 등록 전·후 검증 절차 강화 필요 ☞ 우수특허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자 치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	<특허 검증 및 보호 강화> ①(특허취소신청제도) 국민 참여로 등록특허를 6개월간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제도 ②(직권 재심사제도) 특허결정 후에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 ③(무효심결 예고제도) 무효심판 진행 중 일부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서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제도
▶ 공유특허 양도 비율 28%('13) ▶ 공유특허 대금분할 인정으로 실시사업 중단 우려 ▶ 실시사업 보호를 위한 실시권 등록비율 1.3%(추정)에 불과 ☞ 특허기술 활용 촉진 및 실시사업 보호 수단 필요	<공유특허 활용 촉진 및 실시사업 보호> ④(공유특허제도 개선) 타 공유자 동의 없이도 지분 전체 양도를 허용하는 등 공유특허 기술이전 요건 완화, 1회 계약으로 5년 이상도 분할(경매) 금지 가능 ⑤(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) 특허청에 통상 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사실 증명만으로 추후 특허권을 양수받는 자에게 대항 가능
▶ 권리 미확정 기간 장기화로 제3자 감시부담 증가 * IP5 중 심사청구기간 최장 (참고: 日·中 3년, EPO 2년) ▶ 무분별한 정정심판으로 분쟁 장기화 ☞ 조속한 권리확정 및 분쟁 장기화 방지 필요	<조속한 권리확정 및 분쟁 장기화 방지> ⑥(심사청구기간 단축)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⑦(정정심판 청구시기 합리적 조정) 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해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변론 종결 전까지만 정정심판을 청구토록 개선